

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

의안번호	제2019-18-291호	의 결 사 항
의결일자	2019. 9. 23.	

지역아동센터 개인정보 보호 개선에 관한 건

제 출 자	개인정보보호위원회
	위원 김자혜
제출일자	2019. 9. 23.

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

결 정

의 안 번 호 제2019-18-291호
의 안 명 지역아동센터 개인정보 보호 개선에 관한 건
의결연월일 2019. 9. 23.

주 문

보건복지부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 등이 관련 결산자료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에 공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한다.

1. 개인정보 노출 등 동일·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조 제6항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
2.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 공시자료 중 개인정보의 노출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히 침해가 중지되도록 조치할 것

이 유

별지와 같다.

2019년 9월 23일

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

지역아동센터 개인정보 보호 개선 권고에 관한 검토

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(보건복지부)에 아동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어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가 필요함

1. 검토 배경 및 사건 경과

- 보건복지부(이하 복지부)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광주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내용 중에
 - 취약계층 아동의 실명과 지원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여과없이 노출된 사실이 언론(KBC)을 통해 보도됨('19.9.6.)
 - ※ 저소득층 여아 생리대 구매, 교복 지원, 한부모 가정 지원 등
- 보도 이후 복지부는 긴급공지를 통해 해당 시스템 상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 확인 및 공시된 자료 삭제 등 점검 강화를 지시('19.9.6.)
 - 다만, 공지 이후에도 시스템 상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자료에서 실명이 확인되는 등 노출이 지속되고 있음('19.9.18. 현재)
- 이에 따라 향후 아동 관련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해당 부처에 권고 할 필요(제8조제1항제2호)
 - <붙임1>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

2. 검토

1 현황

-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(이하 시설 등)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(사회보장정보원 운영)을 통해 후원금 사용 내역을 공시할 수 있음

<붙임2>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규정

※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제19조 및 41조의6
(보건복지부령 제642호)

- 시설 등(지역아동센터)은 운영지침*에 따라 아동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해야 하는 책임 있음

※ <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81쪽> (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)

바. 개인정보보호

- 1) 시설은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, 아동 개인정보의 수집·유출·오용·남용으로 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함(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장 제1조)
- 2) 아동 최초 등록 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선택항목(문화체험 시 여행자보험, 아동지원, 홈페이지 활용, 홍보 및 후원연계의 목적등)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동의서를 받아야 함(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2조 1항)
※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75조 제3항 제 2호)
- 3) 이용종결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문서를 보존기간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, 보관시에는 개인정보가 유출 및 훼손되지 않도록 문서보관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함(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1조 제1항, 제2항, 제3항)
※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75조 제2항 제4호, 제3항 제1호)

2 사건 검토

- 금번 사건은 아동·청소년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으로서 노출 범위가 광범위하고,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큼

- 한편, 결산보고서 상의 집행내역에 수익자의 실명을 기재하는 것은 자료 공시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처리라고 판단됨

⇒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인 필요한 목적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(보호법 제3조제2항)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(같은 조 제6항) 위반

- 개인정보에 대한 관련 지침은 마련되어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수집 동의·파기·보관의 원칙 등을 제시하는 수준임
 -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술적·관리적 보호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무적인 개인정보 점검·방지체계가 부족함
 - ⇒ 구체적인 관리 기준 및 업무수행 절차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동일·유사 사례가 언제든지 재발할 우려

- 민간기관인 지역아동센터(4,200여개소)는 인력·조직규모가 상이하고 부처의 직접 감독도 어려워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보임
 - ⇒ 개별 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대책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병행할 필요

③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대안(예시)

□ 관리적 대안 마련

- (규정 개정)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제19조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의 내용을 제4항으로 추가
 - * 필요시 시행령 등에 행정·재정상 불이익 부과 규정 신설 고려

- (지침 개선) 운영지침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구체적 절차 및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
 - * 시설 담당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체크리스트 마련 등 포함

- (운영 개선) ① 최종 공시 전 개인정보 노출여부에 대하여 상급자 확인 절차 등 내부 점검 프로세스 마련, ② 해당기관 여건에 맞는 종사자 대상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및 지도·점검 실시 등

□ 기술적 대안 마련

- 후원금 사용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공시할 때 개인정보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선

4 추가 검토

- 복지부는 여전히 개인정보가 노출된 결산자료가 공시된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파악 및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
- 금번 사건에서 문제된 아동·청소년 외에도 동 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노인·장애인·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시급한 점검 필요

3. 개선 권고

- 보건복지부는 동일·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조 제6항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함
- 지역아동센터 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 공시되고 있는 노인·장애인시설 등 관련 분야에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

□ 개인정보 보호법

제3조(개인정보 보호 원칙)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호위원회의 기능 등)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2.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,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

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.

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(보건복지부령 제642호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3조제4항, 제34조제4항,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·회계,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·회계,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·공정성·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·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(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)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(후략)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·세출결산서를 시·군·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(전산파일을 포함한다)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후원자의 성명(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)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공개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